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324호로 2021년 4월 8일 정선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 유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를 누수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 현행화(안 제2조)
- 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 나. 협 의: 일자리정책과
- 다. 입법예고 결과(2021. 4. 8. ~ 4. 13.):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에 이르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호의 소상공인의 정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시행 2021.2.5.)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2.5.)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음.
-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조항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사업장이 영등포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하였음.

현행 조례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근거만 있어, 본 개정안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는 폐업이 빈발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 대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325호로 2021년 4월 8일 정선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 현행화(안 제2조)
- 나. 금융기관의 저금리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신설  
(안 제4조제1항제2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 나. 입법예고 결과(2021. 4. 8. ~ 4. 13.):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융자 대출 이율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의2제2호의 소상공인의 정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시행 2021.2.5.)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2.5.)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음.
- 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 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게 하였음. 기금은 그 사용이 용도에 한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바 기금의 용도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는 타당한 개정임.

###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금 융자 대출이율을 면제하는 것은 한시적으로나마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부에서는 지원 대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후속 절차 추진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